

의안번호	2203942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8.
추 계 번호	24A3737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(유통전문인력의 양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①제8조제7항 ¹⁾ 에 따른 전문기관 및 ②제8조의4 ²⁾ 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제23조제1항 ³⁾ 각 호의 사업(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)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1)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⑦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(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)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,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

제6조의6(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)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

2) 안 제8조의4(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(이하 “상권영향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상권영향평가기관의 활동 지역 설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상권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
2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

3)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제23조(유통전문인력의 양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·연수
2.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·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·연수
3. 선진유통기법의 개발·보급
4.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(유통전문인력의 양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현행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①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)과 ②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(이하 “상권영향평가기관”)을 추가하는 내용
- 개정안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는 경우, 기존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관을 신규 선정하여 보조금·출연금·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
-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 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전문기관 또는 상권영향평가기관에 국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의 증가분이나, 추계에 필요한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전문기관의 경우 현행법 제8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, 두 기관은 현행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4)에 따라 이미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으로, 개정

4)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제23조(유통전문인력의 양성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

되더라도 문언상 지원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⁵⁾

○ 상권영향평가기관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기관으로 현행법령⁶⁾에 따라 상권의 특성과 경쟁 상황,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을 대행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, 구체적인 지정 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⁷⁾ 해당 기관 중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기관의 범위와 수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
○ 아울러, 해당 사업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추가 투입 규모에 따라 재정지출이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－ 참고로, 각 부처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현행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 중인 사업이 없으며,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“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(R&D)”의 내역사업으로 유통·물류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(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각 7억원)

* [참고자료]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현황

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
3. 유통연수기관
- ③ 제2항제3호의 “유통연수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1. 「상공회의소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“대한상공회의소”라 한다)
 2. 「산업발전법」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
 3.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

5) 개정안 시행 시 시행령 제6조의6도 개정되어 전문기관의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으나, 비용추계의 기본 전제에 따라 개정규정 외의 다른 사항은 현행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검토함

6)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

항 목		작성 기준 및 방법
1. 요약문	가. 상권의 특성 나. 상권의 경쟁 상황 다. 상권 및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	상권의 특성, 기존 사업자 현황, 상권영향 기술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

(이하 생략)

7) 안 제8조의4(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(이하 “상권영향평가 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⑥ 상권영향평가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- 이에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현황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데이터기반 유통·물류산업전문인력양성(내내역사업)
- 목적 : 유통·물류산업과 연관 전후방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·AI 기반 유통·물류산업 석·박사 전문인력 양성
- 기간 : '22.3.1~'27.2.28
- 지원내용 : 인건비(학생인건비 포함),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, 교육과정 개발·운영비, 전문가 활용비 등
- 인력양성규모 : 2024년 20명, 2025년(안) 21명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사업명(세부사업코드)	예산액	
		2024	2025정부안
세부사업	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(3161-315)	(157,479)	(166,145)
내역사업	교육훈련	(142,754)	(149,420)
내내역사업	데이터기반 유통·물류산업전문인력양성	700	70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「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